

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93호, 2024. 12. 30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고용보험기획과), 044-202-7358

1. 예술인의 기준보수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: 월 800,000원

2.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

가. 공제율: 분야별 차등없이 25%

나. 공제 산식: {(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) - (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)}×25%

3. 행정사항

가. 시행일: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재검토기한(3년):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.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